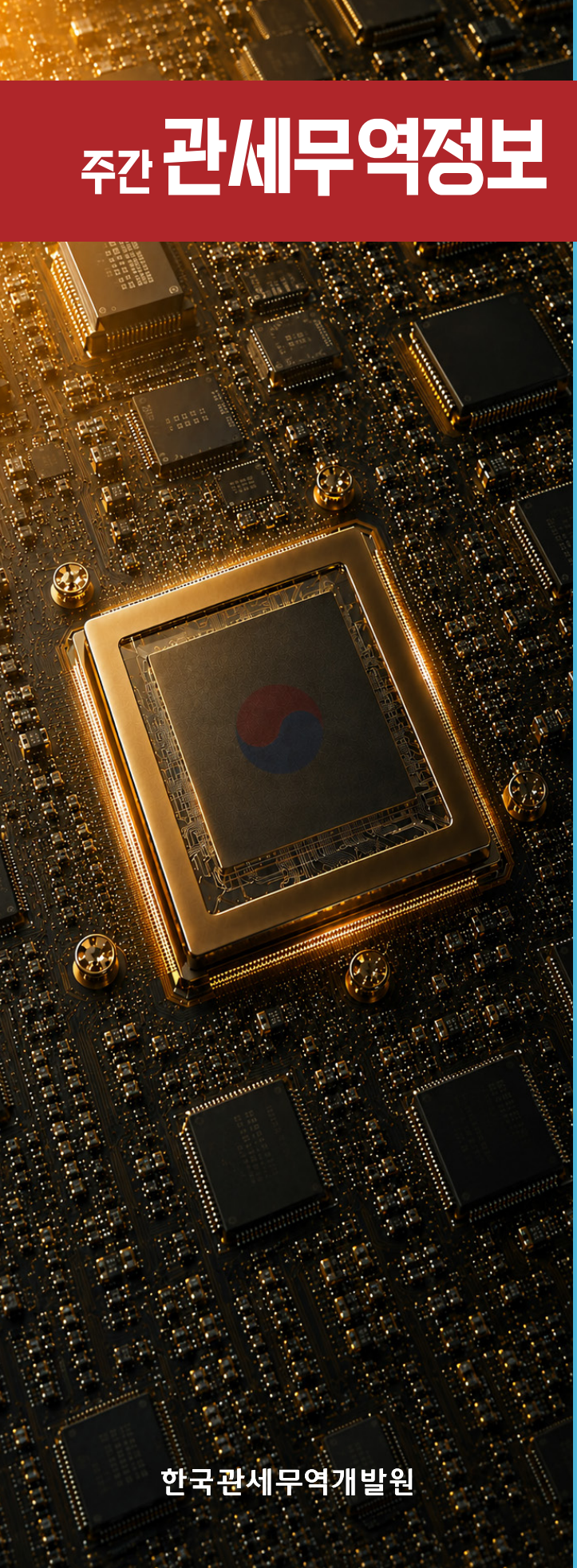

주간 관세무역정보 vol.2192 2026.8.24.

반도체 호황에 7월 수출 990억달러 역대 최대 기록

[이주의 초점]
수출 호조 속 상위 10대 기업 무역집중도 높아져 (4p)

[위클리뉴스]
관세청, 집중호우 피해기업 지원 발표 "관세 납부기한 최대 1년 연장"
중국 수출 문턱 낮아진 K-푸드… 수출식품 등록 간소화·육류 라면도 허용
요소수·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10월 말까지 연장 (7p)

[비관세장벽 리포트]
EU, 식품접촉 포장재 BPA 사용 금지 본격화… 캔 코팅·접착제·밀봉재·인쇄잉크까지 점검 필요 (12p)

[오피니언: 미국]
미국, 관세 사기에 전면전 선포… '행정실수' 아닌 '경제범죄'로 본다 (16p)

[판례 동향]
관세조사 종료일 이후에도 조사행위가 이뤄진 경우 과세 적법성 판단 (21p)

[품목분류 동향]
비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직물의 HS Code (36p)

한국관세무역개발원



※ AI 생성 이미지

발 행 인	백형민
편 집 인	남성훈
총 괄	김민정
취 재	강보람 aorigaski@kctdi.or.kr 김성은 ray1023@kctdi.or.kr 김다솔 kds5817@kctdi.or.kr
마 케 팅	김진우 kjw@kctdi.or.kr
디 자 인	경성문화사

발 행 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 행 일	2026년 8월 24일(통권 제2192호)
I S S N	2799-7251
e-ISSN	2799-726X
등록번호	서울 다07117(2005.5.20.)
주 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22 6층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지식사업실
홈페이지	www.kctdi.or.kr
S N S	blog.naver.com/kctdi1964 www.instagram.com/kctdi_library

* 본지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협의 또는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지에서 제기한 의견 등은 필자가 소속한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CONTENTS

이주의 초점

04 반도체 호황에 7월에만 수출 990억달러···
14개월 연속 증가하며 역대 최대 기록

07 **Weekly News**

비관세장벽 리포트

12 EU, 식품접촉재 BPA 사용 금지 본격화···
수출기업 포장재 다시 살펴야

오피니언

16 **시선, 미국통관**

김진정 ACI Law Group, PC
(미국변호사·관세사)

미국, 관세 사기에 전면전 선포
이제 '행정실수' 아닌 '경제범죄'로 본다

관세행정실무해설

19 **질의응답사례**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의 수출신고서 정정

판례동향

21 **관세판례해설**

관세조사 종료일 이후에도 조사행위가 이뤄진 경우 과세 적법성 판단

품목분류동향

36 **세번 바로잡기**

비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직물의 HS Code

반도체 호황에 7월에만 수출 990억달러··· 14개월 연속 증가하며 역대 최대 기록

수출 호조 속 상위 10대 기업 무역집중도 높아져

우리나라 수출이 반도체와 컴퓨터 등 정보기술(IT) 품목을 앞세워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7월 수출은 확정치 기준 990억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63.0% 증가했고, 일평균 수출도 70% 가까이 늘었다. 2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에서도 기업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5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업별로 들여다보면 대기업과 전기전자 업종의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수출액 상위 10대 기업이 전체 기업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무역집중도도 크게 높아졌다.

■ 반도체 수출 전년 동월 대비 179% 증가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14일 발표한 '최근경제동향'과 관세청이 18일 발표한 '7월 월간 수출입 현황(확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갔다. 수출 증가세를 이끈 것은 반도체와 컴퓨터를 비롯한 IT 품목이다. 재경부 '최근경제동향'에 수록된 관세청 통계자료(잠정치)에 따르면 7월 컴퓨터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04% 증가했고 반도체는 179% 늘었다. 무선통신기기는 51%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 7월 수출액은 412억달러로 2개월 연속 400억달러를 넘어서며 1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비IT 품목 수출에서도 선박 47%, 화장품 38%, 석유제품 34%, 바이오헬스 30%, 비철금속 24%, 이차전지 17% 등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기기기와 생활용품은 각각 14%, 석유화학 10%, 자동차 7%, 일반기계는 6% 증가한 반면 가전은 4% 감소했다.

● 2025년 대비 2026년 수출입 ●

(단위 : 100만달러)

구분	2025년		2026년		
	7월	1~7월	6월	7월	1~7월
수출 (전년 동기 대비)	60,724 (5.7%)	395,389 (0.8%)	101,956 (70.4%)	98,959 (63.0%)	595,063 (50.5%)
수입 (전년 동기 대비)	54,210 (0.7%)	361,456 (△1.2%)	66,052 (30.0%)	68,567 (26.5%)	427,303 (18.2%)
무역수지	6,514	33,933	35,905	30,392	167,760

출처: 관세청

지역별로도 주요 시장 대부분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중국으로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96.2% 증가하며 9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메모리 반도체와 컴퓨터 주변기기 수출이 급증한 덕분이다. 대미 수출 또한 전년 동월 대비 69.1%(174억 7,000만달러) 늘었는데, 메모리 반도체(275.7%), 컴퓨터 주변기기(506.0%), 석유제품(108.8%), 승용차(17.9%) 등이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그밖에 베트남(79.3%), 유럽연합(55.6%), 대만(22.0%), 중동(24.7%) 등 주요 지역에서 견조한 실적을 거뒀다.

● 월별 수출액·수입액·무역수지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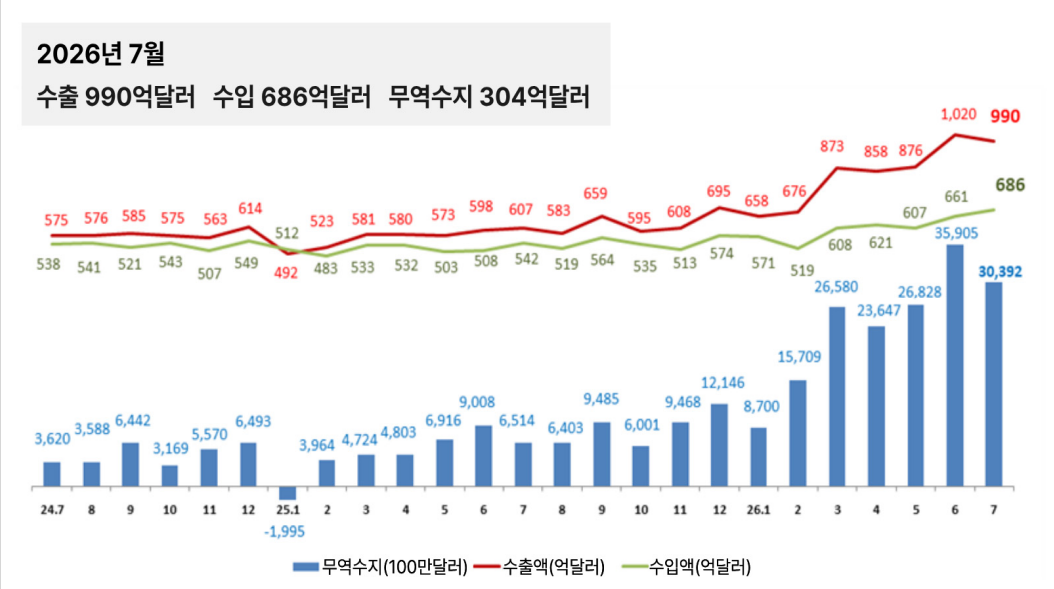

확정치 기준(자료: 관세청, 편집: 주간 관세무역정보)

올해 들어 월별 수출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1월 658억 5,000만달러였던 수출은 3월 873억 4,000만달러, 5월 876억 1,000만달러로 늘었고 6월에는 1,020억달러를 기록했다. 7월 수출은 관세청 확정치 기준 989억 5,900만달러에 달했다.

확정치 기준 7월 수입액은 685억 6,700만달러였다. 에너지 수입이 단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50.1%, 비에너지 수입은 21.4% 증가했다. 수출 증가 폭이 수입을 크게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303억 9,2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4월 236억 5,000만달러, 5월 268억 5,000만달러, 6월 360억 9,000만달러에 이어 4개월 연속 200억달러를 웃도는 흑자를 이어갔다.

■ 수출 늘면서 상위 10대 기업 무역집중도 55.3%

반도체 수출이 초강세를 띠며 수출액을 끌어올렸지만 대기업으로의 '수출 쏠림'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와 관세청이 8월 11일 발표한 '2026년 2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 결과'에 따르면 2분기 기업 수출액은 2,755억달러로 전년 같은 분기 대비 57.3% 증가했다. 수입액은 1,889억달러로 22.4% 늘었다.

수출 참여기업은 6만 9,906개로 2.0% 증가했고 수입기업은 16만 1,277개로 3.5% 늘었다. 수출액 증가율이 수출기업 수 증가율을 크게 웃돌면서 기업당 수출 규모가 확대되는 흐름을 보였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의 증가 폭이 가장 컸다. 2분기 대기업 수출액은 2,060억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81.8% 증가했다. 중견기업은 359억달러로 10.9%, 중소기업은 327억달러로 13.1% 늘었다. 수입에서도 대기업은 1,124억달러(27.2%) 증가했으며 중견기업은 328억달러(19.0%), 중소기업은 419억달러(13.9%) 늘었다.

종사자 규모별로도 규모가 큰 기업의 수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는데 종사자 250인 이상 기업의 2분기 수출액은 2,346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7.4% 증가한 반면, 종사자 1~9인 기업은 103억달러로 8.5% 늘었다.

● 2023~2026년 수출 기업의 무역집중도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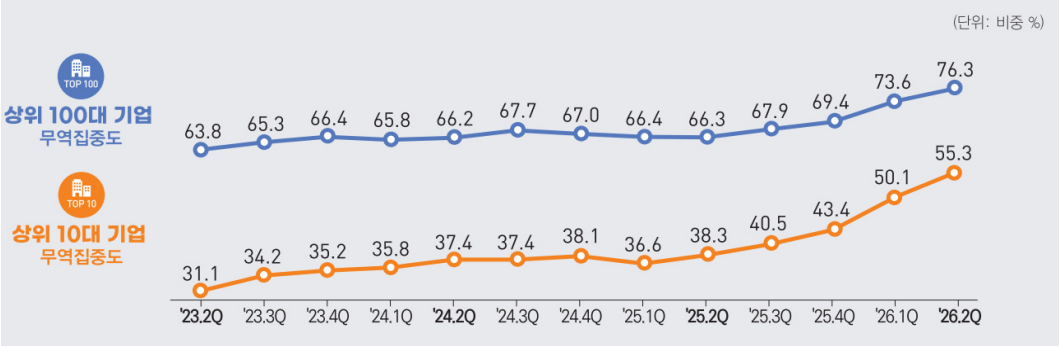

출처: 국가데이터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상위 기업에 대한 집중도는 높아졌다. 수출액 상위 10대 기업이 전체 기업 수출에서 차지하는 무역집중도는 55.3%로 전년 같은 분기보다 17.0%p 상승했다. 상위 10대 기업의 무역집중도는 2023년 2분기 31.1%에서 2025년 2분기 38.3%로 높아진 데 이어 올해 1분기 50.1%, 2분기 55.3%로 상승했다. 상위 100대 기업의 무역집중도는 76.3%에 달했다.

재경부는 최근 우리 경제가 수출의 큰 폭 증가 등에 힘입어 경기회복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는 완만한 성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동전쟁과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전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품목의 수급관리 등 경제성장전략을 살피겠다고 전했다. | 김성은 기자 |

관세청, 집중호우 피해기업 대상 지원 발표 "관세 납부기한 최대 1년 연장"

관세조사·FTA 원산지검증 연말까지 유예

거제·통영 등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수출입기업은 관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 연장하거나 담보 없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관세조사와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검증도 연말까지 유예된다.

관세청은 8월 20일 집중호우 피해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세정지원과 관세조사 유예, 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특별통관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피해기업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는 생략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 이미 납부한 관세는 환급 신청 당일 환급금을 지급한다. 공장이나 창고 침수로 수입물품이 손상·변질된 경우에는 가치 감소분만큼 관세를 감면하며, 지정보세구역 장치 물품이 손상된 경우에는 관세 환급 조치를 취한다. 체납기업이 체납세액 분할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도 유예한다.

집중호우로 사업장이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한 관세조사는 원칙적으로 올해 말까지 유예한다. 관세청은 이미 관세조사 사전통지를 받았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기업이 조사 연기 또는 중지를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설명했다. FTA 원산지검증에 착수하지 않은 피해 수입기업은 연말까지 원산지검증을 보류하고 검증 진행 중인 기업의 연기 신청도 적극 수용한다. 피해 수출기업에 대해 협정 상대국이 원산지검증을 요청한 경우에는 상대 관세당국에 검증기한 연장을 요청하고, 기업의 원산지 증빙자료 제출기한도 연장한다.

● 집중호우 피해 수출입기업 위한 관세행정 ●

세정지원	• 수입물품 관세 등 제세 납부기한 최대 1년까지 연장 또는 분할 납부 허용, 담보제공 의무 생략 • 수출용 원재료의 기납부 관세환급 신청 당일 환급금 지급 • 공장·창고 침수로 손상·변질 수입물품은 감면 또는 관세환급 • 체납 기업이 체납새액 분할납부계획서 제출 시 통관 일시적 허용, 강제징수 유예
관세조사 유예	• 집중호우 피해 기업 연말까지 관세조사 유예 • 관세조사 사전통지 또는 진행 중인 기업은 신청 시 조사 연기·중지
FTA 원산지검증 지원	• 원산지검증 착수 전 피해 수입기업은 연말까지 원산지검증 보류 • 검증 진행 중 기업은 연기 신청 시 적극 수용 • 피해 수출기업에 대한 협정 상대국의 요청 건은 검증기한 연장 요청 및 증빙자료 제출기한 연장
특별통관 지원	• 집중호우 피해 이후 긴급 조달 원부자재 신속통관 지원 • 피해 수출물품의 적기선적 곤란할 경우 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기간 연장

공장 폐쇄 등으로 긴급하게 조달해야 하는 원부자재는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제조시설 피해로 수출물품을 적기에 선적하기 어려운 기업은 항공기·선박 적재기간을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30일 이내에서 1년 범위 내로 연장 가능하다. 집중호우 관련 피해 사실과 지원 신청은 전국 34개 세관에 마련된 관세행정 종합지원 창구에서 접수할 수 있다. | 김성은 기자 |

중국 수출 문턱 낮아진 K-푸드··· 수출식품 등록 간소화·육류 함유된 라면도 허용

육류 성분이 함유된 라면의 중국 수출이 허용되는 등 K-푸드의 중국시장 진출이 보다 원활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월 20일 중국 다롄에서 열린 '2026 APEC 세관-기업 대화(ACBD, APEC Customs-Business Dialogue)'에 참석해 중국의 세관 해관총서와 식품안전 분야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ACBD는 회원국 세관당국과 정부, 기업이 참여해 스마트 세관 구축, 무역원활화, 식품안전, 공급망 협력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우선 양국은 중국 수출식품 생산업체 등록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에 수출 희망업체는 개별적으로 중국정부에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 국내에서도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 통합민원창구를 통해 관련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식약처의 검토를 거쳐 승인된 등록·변경 사항은 중국 당국에서도 인정된다.

이번 절차 개선으로 축산물을 제외한 식품업체가 등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기존 약 3개월에서 10일 안팎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기업의 행정적인 부담이 완화되고 수출 준비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등록 절차가 빨라지면서 신청 지연으로 발생하던 업계 손실도 연간 약 3,7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육류 성분이 함유된 라면의 중국 수출 위생요건이 마련된다. 그동안 국내 라면은 육류 성분이 소량 들어가도 가축전염병을 이유로 중국 수출에 제약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 합의에 따라 중국이 인정한 국가의 원료육 사용, 정해진 열처리 기준 등 위생요건을 충족한 제품은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국내 판매용과 중국 수출용 제품을 별도로 생산해야 했던 기업의 부담이 완화돼 생산효율과 원가 경쟁력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향후 육류 성분이 포함된 소스류, 즉석식품 등 다양한 식품으로 확대돼 적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품기업의 중국 수출절차를 간소화하고 통관 편의를 높이는 것은 물론, 육류 성분 함유 라면의 중국 수출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주요 교역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K-푸드 수출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번 ACBD 합의에 따른 세부사항을 향후 식품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에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 김다솔 기자 |

해수부, 한·중 수산물 검사·검역증명서 전자화 추진

한국과 중국 간 수산물 수출입 시 필요한 검사·검역증명서가 전자증명서로 전환된다. 해양수산부는 8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중국 해관총서와 '한·중 수산물 전자증명서 업무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에 따라 양국은 수산물 전자증명서 발급·교환, 시스템 상호운용성 강화 및 시범사업 추진, 전자증명 관련 기술 교류, 대상품목 확대 등을 협력할 예정이다.

현재 수산물 수출입 시에는 수출국 정부가 발급한 종이검사·검역증명서를 국제우편 등으로 송부해 수입국에 제출해야 했지만, 향후 전자증명서 체계가 구축되면 양국 정부 시스템을 통해 증명서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직접 교환할 수 있게 된다.

해수부는 전자증명서 도입으로 증명서 위·변조 가능성을 차단하고 발급·송부 및 확인에 걸리는 시간을 줄여 통관절차가 신속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종이증명서 발급과 국제우편 송부 등이 불필요해짐에 따라 연간 약 30억원의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2025년 기준 중국은 우리나라의 수산물 제1교역국으로 양국의 수산물 검사·검역증명서 발급 건수는 수출 7,197건, 수입 3만 193건 등 총 3만 7,000여 건이다.

해수부는 앞으로 전자증명서 발급을 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시스템 연계방식, 정보보안 기준, 시범사업 일정 등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 김진우 기자 |

요소수·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10월 말까지 연장

정부가 요소수·요소와 의료용 주사기·주사침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10월 말까지 두 달 연장한다. 재정경제부가 8월 20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와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10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중동 정세와 품목별 수급 상황을 점검한 뒤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요소수·요소의 매점매석 판단기준은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7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에서 200%를 초과하는 경우로 완화된다. 적용 대상은 요소수 수입·제조·판매업자와 요소 수입·판매업자다.

적용 물품	적용 대상	현행	개정안
요소수 요소	요소수 수입· 제조·판매자 요소 수입·판매자	•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 초과 보관 금지 • 2026년 8월 31일까지 적용	•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200% 초과 보관 금지 • 2026년 10월 31일까지 적용
주사기 주사침	주사기·주사침 제조·판매자	•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200% 초과해 5일 이상 보관 금지 • 2026년 8월 31일까지 적용	•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200% 초과해 5일 이상 보관 금지 • 2026년 10월 31일까지 적용

관계부처에 따르면, 중국은 약 200만톤의 요소 수출쿼터를 배정했다. 국내기업도 중국산 요소 약 7,000톤의 도입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국내 한 달 사용량에 해당하며, 공공비축과 민간재고를 합친 국내 요소 재고는 평시 수준인 3~4개월분이다. 정부는 요소 수급이 안정세를 보이는 만큼 제조·유통업체가 재고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보관기준을 완화하되 중동 정세에 따른 공급망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매점매석 금지 조치 자체는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주사기 및 주사침의 매점매석 금지 등에 관한 고시」의 경우 지난 7월 24일 보관량 기준을 200%로 완화하고 판매량 제한을 해제한 만큼 이번에는 현행 기준을 유지한 채 기간만 10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6월 이후 제조업체 재고가 늘어 공급은 안정됐지만, 나프타 등 원료의 수급 불안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시행 중인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는 9월 12일 종료 예정이다.

| 김다솔 기자 |

무역위, 중국·대만산 고체 수산화나트륨에 '최대 38.89%' 반덤핑관세 예비판정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8월 20일 제476차 회의를 열고 중국·대만산 고체 수산화나트륨의 덤핑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봤다고 예비판정했다. 무역위는 본조사 기간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무역위가 이날 발표한 예비판정 결과에 따르면, 중국산에는 공급자별로 3.66~22.21%, 대만산에는 38.89%의 관세율이 부과될 예정이다.

●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내용 ●

공급국 관세영역	공급자 (수출자, 생산자)	잠정덤핑방지 관세율(%)
중국	동루이(Shandong Befar Group Dongrui Chemical Co., Ltd.) 및 그 관계사	3.66
	스카이 임펙스(Skyey Impex Limited)	22.21
	유니라이온(Tianjin Unilion Supply Chain Co., Ltd.)	19.93
	그 밖의 공급자	17.58
대만	포모사(Formosa Plastics Corporation)	38.89
	그 밖의 공급자	38.89

출처: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

조사 대상은 액체 수산화나트륨을 고농도로 농축·가공한 백색 고체 수산화나트륨이다. 백색의 고체로 비누·세제 제조와 공정 수소이온농도(pH) 조절, 수처리, 섬유·펄프·제지 가공 등에 쓰이며 품목분류는 제2815.11-0000호에 해당한다. 해당 물품의 기본관세율은 8%로, 대만산에는

WTO 협정세율 5.5%가 적용되며, 중국산의 경우 한·중 FTA 협정관세율 0%가 적용된다.

무역위는 이날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의 국내 산업 피해조사 관련 공청회도 열었다. 국내 생산자와 수입자, 수요자 등의 의견을 검토하고 추가 조사를 거쳐 오는 10월 최종 판정할 계획이다. | 김성은 기자 |

수출식품 위생증명서 신청 간편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등을 수출할 때 필요한 위생증명서 발급 절차를 개선했다. 위생증명서는 식품,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생산·가공·관리되고 있는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다. 물품을 외국으로 수출할 때 상대국으로 수입 허가나 통관 요건을 맞추기 위해 주로 요구된다. 8월 20일 식약처에 따르면 위생증명서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통합민원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 위생증명서 신청방법 ●

1. 검색창에 '증명' 입력 후 검색
2. 조회된 민원사무명에서 '수출 식품·건강기능식품·축산물 영문증명' 선택
3. 민원 처리부서 선택
   - 축산물(수의사 서명 필요시): 해당 농축수산물안전과 또는 식품안전관리과 선택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인정 증명서: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기준기획관 식품기준과
   - 그 외: 지방청 운영지원과
4. '민원신청' 클릭

아울러 식약처는 식품 등을 수출하는 영업자의 위생증명서 발급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 질의응답집'을 개정했다고 안내했다. 각 지방식약청에 자주 접수된 문의 사례와 민원인 의견을 반영해 위생증명서 신청방법을 개선하고, 증명서 작성방법을 신청 단계별로 안내하는 자료를 추가해 신청 과정에서 겪는 혼선을 줄이고 편의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안내서에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성분 및 내용에 대한 위생증명서 신청 시 기재방법, ▲위생증명서 재발급 가능 여부, ▲발급 신청이 반려된 경우 재신청 방법, ▲증명서 출력 방법 등 그동안 민원이 많았던 사항이 포함됐다. | 김다솔 기자 |

※ 주간 관세무역정보 '위클리뉴스' 코너에서는 관세무역 관련 주요 뉴스를 요약 정리해 전해드립니다. 기사 전문 및 더 자세하고 다양한 관세무역 뉴스는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홈페이지(www.kctdi.or.kr) > 관세무역동향**에서 매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비관세 장벽 리포트

최근 탄소배출량, 강제노동 검증 등 비관세장벽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좌우하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수출 리스크를 알아본다.

EU, 식품접촉재 BPA 사용 금지 본격화… 수출기업 포장재 다시 살펴야

캔 코팅·접착제·밀봉재·인쇄잉크까지 점검 필요

유럽연합(EU)의 식품접촉재 비스페놀 A(BPA, Bisphenol A) 사용금지 규정이 본격 적용되고 있다. 일반적인 최종 식품접촉제품에 적용됐던 전환기간이 지난 7월 20일 종료되면서, 이후 EU 시장에 처음 출시되는 제품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BPA 사용금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U 집행위원회는 2024년 12월 'Commission Regulation (EU) 2024/3190'을 채택해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식품접촉재 제조에 BPA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BPA는 식품용기와 다회용 음료병, 금속 캔 내부 코팅 등 다양한 식품접촉재에 사용돼 온 화학물질이다. 그러나 식품접촉재에서 식품으로 BPA가 이행될 가능성과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제기되면서 EU는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2011년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유아용 젖병에 대한 BPA 사용 및 EU 역내 수입·판매를 전면 금지했으며, 2018년부터는 유아용 분유 및 이유식에 사용되는 컵·식기·포장재 등으로 규제 대상을 확대했다. 여기에 BPA의 내분비계 교란 유해성 관련 과학적 조사를 근거로 해당 규정을 공식 채택한 것이다.

규제 대상은 BPA에 그치지 않는다. 발암성·생식세포 변이원성·생식독성 또는 인체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조화분류된 다른 유해 비스페놀과 비스페놀 유도체도 포함된다.

제품별 규제 적용되는 시점 달라… 일부 품목은 2028년 시행

EU는 기존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제조·유통해 온 제품에 대해 유형별로 전환기간을 두고 있다. 일반적인 일회용 최종 식품접촉제품은 전환기간인 2026년 7월 20일까지 EU 시장에 최초 출시할 수 있었다. 전환기간 내 적법하게 출시된 제품은 종료 후 12개월 동안 식품을 충전·밀봉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이렇게 포장된 식품은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유통할 수 있다.

일반적인 다회용 가능 최종 식품접촉제품 역시 2026년 7월 20일까지 최초 시장출시가 허용된

경우에 한해 2027년 7월 20일까지 계속 유통할 수 있다.

일부 제품의 전환기간은 더 길다. 과일·채소 또는 수산제품 보존용 일부 일회성 최종 식품접촉제품 가운데 BPA를 사용한 바니시·코팅이 적용된 제품은 2028년 1월 20일까지 최초 시장출시가 허용된다. 과일·채소 또는 수산제품을 보존하기 위한 일부 캔·뚜껑 등 식품접촉제품이 여기에 해당된다. 단, 과일주스류는 제외된다.

● 제품 유형별 규제 적용기한 ●

	규제 적용 품목(예시)	규제 적용 시점	비고
일회용 제품 일반	• 식품용 일회용 식기, 트레이, 랩, PET 용기 등 • 진공포장용 파우치 • 일회용 과자 봉지류 • 음료, 육류, 유제품 캔	(최초 출시) 2026년 7월 20일	규제 적용 시점까지 역내 시장 최초 출시(수입·통관) 가능
		(빈 캔에 식품 충전) 2027년 1월 20일	역내 출시된 제품은 적용 시점까지 식품 충전을 위해 유예기간 부여
일회용 캔·포장재	• 과일·채소 통조림 캔(주스 제외) • 수산물 및 어류 캔 • 외부 표면에만 BPA 코팅된 캔	(최초 출시) 2028년 1월 20일	규제 적용 시점까지 역내 시장 최초 출시(수입·통관) 가능
		(빈 캔에 식품 충전) 2029년 1월 20일	역내 출시된 제품은 적용 시점까지 식품 충전을 위해 유예기간 부여
다회용 제품 일반	• 식기, 텀블러 등	(최초 출시) 2026년 7월 20일	역내 최종 유통 및 매장 판매
		2027년 7월 20일	
다회용 식품 생산장비용 전문 부품	• 식품 생산 공장의 플라스틱 몰드, 기계 부품 등	(최초 출시) 2028년 1월 20일	역내 최종 유통 및 판매
		2029년 1월 20일	

출처: KOTRA 브뤼셀 무역관

BPA를 사용한 바니시 또는 코팅이 금속의 외부 표면에만 적용된 일회용 최종 식품접촉제품도 2028년 1월 20일까지 최초 출시할 수 있다. 이들 일회용 제품 역시 해당 전환기간 종료 후 12개월 동안 식품을 충전·밀봉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이렇게 포장된 식품은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유통할 수 있다.

전문 식품생산장비로 사용하는 다회용 최종 식품접촉제품에도 2028년 1월 20일까지 최초 시장출시할 수 있으며, 최대 2029년 1월 20일까지 계속 유통할 수 있다.

수출제품이 일반제품인지, 특정 식품 보존용인지, 다회용 제품이나 전문 식품생산장비인지에 따라 적용 시점을 확인해야 한다.

캔만 문제 아니다··· 접착제·인쇄잉크·실리콘도 대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파리지사에 따르면 BPA 사용이 금지되는 대상에는 접착제(adhesives)와 고무재료(rubbers), 이온교환수지(ion-exchange resins)와 플라스틱, 인쇄잉크(printing inks)와 실리콘(silicones), 바니시와 코팅제(varnishes and coatings) 등이 포함된다.

파리지사의 정지혜 담당자는 “캔이나 플라스틱 용기뿐 아니라 병뚜껑의 코팅과 밀봉재, 복합필름의 접착층, 포장재 인쇄잉크 등 식품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접촉하거나 성분이 식품으로 이행할 수 있는 구성품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BPA를 다른 비스페놀계 물질로 대체한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 다른 비스페놀 또는 그 유도체를 사용해 식품접촉재를 제조할 경우 잔류 BPA가 없어야 하며, 발암성·생식세포 변이원성·생식독성 또는 인체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분류된 비스페놀과 그 유도체도 규정에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적합성 선언서(DoC) 필수 기재사항

☐ 중간 식품접촉재·최종 제품 식별정보
☐ 발행 사업자
☐ 제조·수입 사업자 신원·주소·연락처
☐ 선언일
☐ 사용된 비스페놀·비스페놀 유도체 목록
☐ EU 규정 준수 선언

"BPA-free" 라벨만으로는 부족 → 시험방법·검출한도 명시된 자료 확보 필수
EU 바이어·관리당국이 적합성 선언서와 시험성적서 등 증빙을 요구할 수 있음

편집: 주간 관세무역정보

수출기업으로서는 규정 준수를 뒷받침할 자료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Regulation (EU) 2024/3190’ 제8조에 따르면 규정 적용 대상인 식품접촉재·제품 가운데 아직 식품과 접촉하지 않은 제품은 소매단계를 제외한 유통단계에서 적합성 선언서(DoC, Declaration of Compliance)를 구비해야 한다. 식품접촉재·제품 제조에 단량체나 기타 출발물질로 사용되는 비스페놀 및 비스페놀 유도체에도 관련 의무가 적용된다.

지난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발표에 따르면 적합성 선언서에는 중간 식품접촉재 또는 최종 식품접촉제품의 식별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선언서 발행 사업자와 식품접촉재 제조·수입 사업자의 신원·주소·연락처, 선언일, 제조에 사용한 비스페놀 또는 비스페놀 유도체 목록, EU 규정 준수 선언 등이 포함돼야 한다.

한국에서 포장을 완료한 식품을 EU로 수출한다고 해서 포장재의 적합성 선언서를 매번 화물에 첨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EU 수입업체나 관리당국이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 EU 유통 현장에서는 관련 증빙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함부르크무역관이 2026년 4월 13일 공개한 현지 동향에 따르면 독일 식품 유통업계는 EU 포장재 규제 강화에 대비해 협력사에 적합 포장재 관련 증빙을 선제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특히 BPA와 관련해 적합성 선언서와 시험성적서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부 대형 유통업체는 강화되는 포장재 요건을 거래 조건이나 공급자 행동규범에 반영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수출 전 포장재 공급망부터 확인해야

aT 파리지사는 수출기업이 포장재 공급업체로부터 원재료·구성정보와 적합성 선언서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BPA 잔류·이행 시험자료를 갖추도록 안내했다. BPA 대체물질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물질이 다른 규제 대상 비스페놀이나 그 유도체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BPA 주요 확인 대상

☐ 플라스틱 (Plastics)
☐ 바니시·코팅제·실리콘 (Varnishes, Coatings, Silicones)
☐ 접착제 (Adhesives)
☐ 인쇄잉크 (Printing inks)
☐ 고무재료 (Rubbers)
☐ 이온교환수지 (Ion-exchange resins)

병뚜껑 코팅·밀봉재, 복합필름 접착층, 포장재 인쇄잉크까지 식품과 직간접 접촉하는 구성품 전체가 대상

수출기업 체크리스트

☐ 캔·병뚜껑·플라스틱 용기·파우치 등 최종 포장재 BPA 사용 여부 확인
☐ 접착제·인쇄잉크·고무·실리콘 등 구성품 전반 확인
☐ 포장재 공급업체로부터 원재료·구성정보 + 적합성 선언서 확보
☐ 필요시 BPA 잔류·이행 시험자료 확보
☐ 대체 비스페놀 물질 사용 시 규제 대상 여부 재확인
☐ 전환조치 적용 물량은 최초 출시일·배치번호 기록·관리

편집: 주간 관세무역정보

BPA를 다른 물질로 대체했다면 해당 물질이 규제 대상 비스페놀이나 그 유도체에 해당하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포장재 제조업체가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수출기업이 별도로 검사결과와 증빙자료를 마련해 EU 수입업체나 관리당국의 요구에 대비해야 한다.

규제가 적용되기 전 EU 시장에 진입한 물량은 언제 EU 역내에 처음 출시됐는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시장출시 시점과 배치번호 등 제품 식별정보를 연계해 관리하면 추후 소명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일반적인 최종 식품접촉제품의 전환기간은 지난 7월 20일 종료됐다. 다만 일부 보존용 일회용 제품과 다회용 제품에는 별도의 전환기간이 적용된다. EU 수출기업은 제품 유형별 적용 시점을 확인하고, 포장재 공급업체로부터 적합성 선언서와 시험자료 등 규정 준수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 김성은 기자 |

시선, 미국 통관

미국 캘리포니아의 관세 전문 김진정 변호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변화와 기업의 대응 전략을 짚어본다.

미국, 관세 사기에 전면전 선포 이제 '행정실수' 아닌 '경제범죄'로 본다

원산지·품목분류·과세가격 재점검 시급



김 진 정 | ACI Law Group, PC(미국변호사·관세사)

미국정부의 관세 집행정책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2026년 7월 14일 미국 법무부(DOJ, Department of Justice)와 국토안보부(DH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는 공동으로 '무역사기 단속을 위한 가이드라인(A Resource Guide to Trade Fraud Enforcement)'을 발표했다. 미국정부가 관세 및 무역 사기에 대한 민사 및 형사 집행방향을 종합적으로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같은 날 법무부는 법무부·국토안보부 합동 무역사기 대응 TF(Trade Fraud Task Force)가 출범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민·형사상 회수액, 벌금, 몰수액 및 기소된 손실액 등이 총 10억달러를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또한 국제무역 관련 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 및 기소하기 위한 '글로벌 무역 및 상업집행부서(GTCES, Global Trade & Commerce Enforcement Section)'도 신설했다.

이는 미국정부가 관세법 위반(Customs Violation)을 더 이상 단순한 관세 행정상의 문제로 보지 않고, 사안에 따라 무역 사기(Trade Fraud) 및 화이트칼라 범죄(White Collar Crime)라는 중대한 경제범죄로 취급하겠다는 정책적 전환을 보여준다.

미국 수입신고에서 수입자(IOR, Importer of Record)는 미국의 품목분류(HTS Classification), 원산지(Country of Origin) 및 과세가격(Customs Value) 등 신고내용의 정확성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을 부담한다. 관세사(Customs Broker)나 해외 공급업체가 관련 정보를 제공했더라도 IOR의 상당한 주의(reasonable care)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법무부는 실제 위법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뿐 아니라, 사실의 진위를 의도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deliberate ignorance) 또는 명백한 위험 신호를 무시한 경우(willful blindness), 즉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까지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본사가 정해준 HTS 번호를 사용했다", "공급업체가 해당 국가가 원산지라고 했다" 또는 "관세사에게 모두 위임했다"는 설명만으로 대응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가장 주의해야 할 무역 사기 유형

이번 가이드라인은 미국정부가 집중적으로 조사 및 단속하는 무역 사기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기업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분야는 ① 허위 원산지 신고, ② 잘못된 품목분류, ③ 저가신고(Undervaluation), ④ 무역법 301조 및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회피, ⑤ 반덤핑·상계관세[AD(Anti-Dumping)/CVD(Countervalling Duty)] 회피, ⑥ FTA 관련 허위신고, ⑦ 관세환급 부정행위(Drawback Fraud), ⑧ 강제노동(Forced Labor) 및 위구르강제노동금지법(UFLPA, 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 관련 위반 등이다.

특히 중국산 물품을 제3국으로 단순 환적하거나 재포장한 뒤 제3국산으로 신고하는 행위는 주요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산 제품의 생산공정을 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높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공급망을 재편한 경우에는 실제 제조공정과 적용되는 원산지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생산기록과 원산지 증빙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부정청구방지법(FCA, False Claims Act) 위험도 커지고 있다. 기업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허위 신고나 중요한 정보를 누락해 미국정부에 납부해야 할 관세를 고의로 회피한 경우에는, FCA가 적용되면 정부가 입은 손실액의 최대 3배(Treble Damages)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과 별도의 법정 민사 벌금(Penalty)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FCA의 퀴탐(qui tam) 제도[1]에 따라 전·현직 직원, 경쟁업체, 거래업체 등이 내부고발자가 돼 소송을 제기해 정부 회수액의 일부를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회사가 내부적으로 관세 문제를 인지하고도 이를 방치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1) 미국에서 시민이 탈세를 하거나 부정부패를 저지른 사람을 신고해 보상금을 받아 내는 것

미 세관국경보호청(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의 단속도 동시에 강화된다. 이번 법무부 정책은 2026년 6월 3일 발표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4411) '세관집행강화(Strengthening Customs Enforcement)'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행정명령은 국토안보부와 CBP에 수입자의 법·규제 준수 이력(Compliance History), 법률집행조치(Enforcement Action) 및 감사(Audit) 결과 등을 바탕으로 IOR의 위험등급을 설정하고, CBP 감사, 보증보험(Bond) 요건, 관세사 감독 및 외국 수입자(Foreign Importer of Record)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결국 앞으로 기업은 개별 수입신고(Entry)의 정확성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회사의 전체적인 통관준수 시스템(Customs Compliance System)이 적절하게 설계돼 실제로 운영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CBP가 문제 삼기 전 미리 점검해야

이번 정책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대응방안은 사전 점검이다. 미국으로 제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최근 수입내역을 기준으로 품목분류, 원산지, 과세가격, 무역법 301조 및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AD/CVD, FTA, 강제노동 및 관련 증빙서류(Supporting Documents)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과거에 했던 신고에서 문제가 발견된다면 CBP가 감사나 조사(Investigation)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신고(Prior Disclosure)가 가능한지를 신속하게 검토해야 한다. 유효한 자진신고는 19 U.S.C. §1592에 따른 페널티를 크게 줄이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번 법무부와 국토안보부 발표가 기업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관세 컴플라이언스는 더 이상 관세사나 물류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다. 잘못된 수입신고가 CBP 감사에서 시작해 부정청구방지법 소송이나 법무부 형사 수사로 확대될 수 있는 새로운 무역집행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CBP가 문제를 제기하면 대응한다"가 아니라 "CBP가 문제를 발견하기 전에 스스로 점검한다"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꿔야 할 것이다.

질의 응답 사례

본 코너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서 상담한 사례 중 주요 내용만 엄선해 제공합니다. 제공하는 사례는 법률적인 유권해석이 아니며, 민원인에게 참조의 편의상 제공하는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권한 있는 해석이 필요할 경우 서면으로 별도 질의하거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기 바랍니다.

관세청 기획조정관 납세자보호팀 고객지원센터

수출 분야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의 수출신고서상 수량과 실제 포장해 반출된 수량이 다른 경우 수출신고서를 정정해야 할까요?

수출신고는 수출신고 당시 물품의 상태 등을 근거로 신고하는 것으로, 실제 포장 개수와 수출신고서의 포장 개수가 상이하다면, 추후 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등록에 차이가 발생해 미선적대상으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251조(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 등) 제1항에 따라 수출자는 수출신고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적재해야 하며, 「관세법 시행규칙」 제79조에 따라 적재기간의 연장 신청도 가능합니다.

수출신고수리 후 미선적으로 처리되면 적재만료일 기준 다음주 월요일에 미선적 과태료가 부과되며, 15일 이내 선적하지 않을 경우 수리취소된다는 예정통보가 나갑니다. 따라서 수출신고서의 포장 개수를 실제(선적예정) 포장 개수로 정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관세법」

제251조(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 등) ①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적재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적재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 「관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적재기간 등 연장승인) 법 제25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적재기간의 연장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신고번호·품명·규격 및 수량
2. 수출자·신고자 및 제조자
3. 연장승인신청의 사유
4. 기타 참고사항

수입요건 분야 **동물용으로 쓰이는 엑스레이 기기의 수입요건이 궁금합니다.**

'엑스선이나 알파선·베타선·감마선·그 밖의 전리선을 사용하는 기기' 중 제9022.14-2000호에 분류되는 '엑스선을 사용하는 기타(내과용·외과용·수의과용으로 한정한다) 기기 중 수의과용 기기'를 수입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세관장확인 수입요건을 구비해야합니다.

□ **[수입승인서(방사성물질등)]「원자력안전법」**
방사선발생장치는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게 요건확인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면제대상은 제외함.

품목분류 분야 **필라테스 기구의 HS Code를 알려주세요.**

문의한 물품이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육상 경기에 사용하는 물품'에 해당된다면 제9506.91-0000호에 분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품목번호			품명
9506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탁구용품을 포함한다), 옥외게임용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paddling pool)용품
	9		기타
	91	0000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육상 경기에 사용하는 물품

제9506호 해설서에서는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제9506호 해설서**
(A)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육상 경기에 사용하는 물품. 예:
그네의 봉과 링(ring) ; 철봉과 평행봉 ; 평균대·안마 ; 포멀호오스(pommel horse) ; 도약판 ; 등반용 로프와 사다리 ; 늑목(wall bar) ; 곤봉(Indian club) ; 아령과 바벨 ; 메디신 볼 ; 육체운동용으로 설계된 것으로서 하나 이상의 핸들을 갖춘 점프볼 ; ··· <중략> ··· 스포츠 활동과 피트니스 클래스용으로 설계된 줄넘기용 줄 ··· <후략>

관세조사 종료일 이후에도 조사행위가 이뤄진 경우 과세 적법성 판단

- 대법원 2025.4.24. 선고 2022두45647 대상판결

최 천 식 | 한국관세통상정책연구소 공동대표

Ⅰ. 머리말

「관세법」 제111조 제1항은 세관공무원이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고 통관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세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한 재조사를 금지하는 중복조사금지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과세관청의 무제한적인 조사권 행사로부터 납세자의 영업 자유와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치주의적 장치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과세관청이 사전에 통지한 조사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자료 제출 요구나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이러한 조사종료일 이후의 추가적인 조사행위가 관세조사권 남용이나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돼 후속 과세처분을 위법하게 만드는지가 법적 쟁점으로 대두될 수 있다.

대상판결(대법원 2025.4.24. 선고 2022두45647 판결)은 통지된 조사종료일 이후 이뤄진 세관공무원의 추가자료 요청 및 검증행위가 종전 관세조사의 연장선상에 있는 적법한 행위인지 아니면,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조사권 남용 또는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판결한 중요한 사례다. 이번 호에서는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와 판결사항을 정리하고 중복조사금지원칙의 법리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구체적 사례를 검토한 후 대법원 판단의 타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Ⅱ. 처분 개요

원고는 스웨덴 본사가 자본금 100%를 투자해 2009년경 설립한 회사다. 원고는 2009년경 스웨덴에 있는 특수관계사이자 그룹의 영업 본사인 A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유통계약 내지 공급계약 등을 체결했고 그에 따라 본사 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수입해 원고가 직영하는 국내 매장에서 독점으로 판매했다. 원고는 2013.6.3.부터 2015.7.30.까지 소외 회사에 구매주문을 하고 본사 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수입하면서(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방글라데시 등 제3국에서 소외 회사 등의 지시·결정에 따라 의류 등을 제조하는 위탁생산업체 명의의

상업송장에 기재된 가격으로 수입통관 절차를 마쳤다.

피고(세관장)는 2015.7.29.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 수입거래에 대한 과세가격 등 통관의 적정성 여부를 2015.8.10.부터 2015.8.28.까지 조사하겠다”는 사전통지를 했다. 피고는 사전통지한 조사기간이 지난 후에도 추가 자료 요청 등을 거친 다음 2017.5.19.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발행한 대금청구서(Invoice)에 기재된 미지급금액(이하 ‘이 사건 미지급금액’이라 한다)도 이 사건 물품의 거래가격에 포함돼야 한다는 조사결과를 통지했다. 피고는 2017.11.7.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의 수입신고분에 관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각 가산세 포함) 합계 9,988,117,640원을 증액경정·고지하면서 경정통지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했다. 피고는 경정통지서 미교부 등을 원인으로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0.4.20.경 위 처분 중 145,193,840원 부분을 직권취소했다(이하 당초처분 중 직권취소 후 남은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Ⅲ. 판결 요지

1. 과세가격 적정성 여부의 판단

원심은,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유통계약 등에 따라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 수입 거래에 관한 대금청구서 등을 발행해 청구하고, 원고는 소외 회사에 물품대금 등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 이 사건 미지급금액은 이 사건 물품 수입거래의 당사자인 소외 회사가 유통계약에 따라 거래상대방인 원고에게 발행한 대금청구서에 기재된 액수이고, 이 사건 미지급금액의 법적 성격이나 원고의 회계처리 방식 등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이 사건 미지급금액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 사건 물품 대가의 일부로서 「관세법」 제30조 제1항 본문의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춰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각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관세조사권 남용금지 및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 여부의 판단

「관세법」 제111조 제1항은 “세관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고 통관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세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 시행령」 제139조의2 제1항은 관세 조사기간은 조사대상자의 수출입 규모, 조사 인원·방법·범위 및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한이 되도록 하되 방문해 조사하는 경우에 그 조사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조사대상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제1호)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증거 확보 등을 위해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등(제4호)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원고가 당초 고지된 조사종료일 직전 또는 조사기간이 도과한 후에야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발행한 대금청구서 및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피고 소속 세관공무원이 조사종료일 이후에도 여러 차례 원고에게 자료 등을 요청하게 된 점, 조사종료일 이후에 실시된 조사행위는 누락된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거나 원고가 이미 제출한 자료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구한 것에 불과하고, 세관공무원이 원고의 사무실 등 현장을 직접 방문해 질문조사권 등을 행사한 것은 아닌 점, 그 과정에서 강요, 회유 등 불법적인 수단이 동원됐다고 볼 수 없고, 원고도 위 조사행위에 임의로 협력하는 등 묵시적으로 동의한 점 등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피고 소속 세관공무원이 당초 고지된 조사종료일 이후에도 일련의 조사행위를 한 것이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것이거나 관세법령상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관세법령의 문언, 체계 및 입법 취지 등과 기록에 비춰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세조사권의 남용금지 및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중복조사금지원칙 위배 여부의 판단

「관세법」 제111조 제2항에 따르면, 세관공무원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안에 관해 이미 조사를 받은 자에 대해 재조사를 할 수 없다.

이때 세관공무원의 조사행위가 「관세법」 제111조가 적용되는 '조사'에 해당하는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 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해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며 납세자 등을 접촉해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검사권을 행사해 과세요건사실을 조사·확인하고 일정한 기간 과세에 필요한 직접·간접의 자료를 검사·조사하고 수집하는 일련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조사'로 봐야 한다(대법원 2020.2.13. 선고 2015두745 판결[1] 등 참조).

---

1) 대법원 2020.2.13. 선고 2015두745 판결은 「관세법」상 중복조사금지원칙이 명시적으로 적용돼 세관장의 후속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패소 확정된 최초의 사건이라는 점에서 관세행정 및 법학계에 매우 중대한 법리적 의의를 지닌다. 기존 관세조사 실무에서는 관세조사의 특수성과 통합조사원칙을 이유로 관세청의 재조사 권한이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본 판결을 통해 대법원은 관세조사 역시 납세자의 기본권과 법적 안정성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헌법」상 적법절차 및 과잉금지원칙의 통제를 엄격히 받는다는 점을 분명히 선언했다. 특히 대법원이 동일한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대해 이미 관세조사를 거쳤음에도 정당한 법정 예외 사유 없이 다시 동일한 사안을 재조사해 과세한 행위는 그 자체로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처분임을 판시함으로써, 관세당국의 자의적인 조사권 남용에 명확한 한계를 설정하고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한 단계 격상시킨 획기적인 이정표로 평가받는다.

원심은, 피고 소속 세관공무원이 당초 고지된 조사종료일 이후에도 계속해 조사를 실시하게 된 경위와 그 목적, 실시한 조사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방법, 조사를 통해 추가로 획득한 자료의 성격, 원고에게 조사결과가 통지된 시점 등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피고 소속 세관공무원이 당초 고지된 조사종료일 이후에도 실시한 일련의 조사행위는 기존 조사행위의 연장일 뿐이라고 봐 이 사건 처분이 「관세법」 제111조 제2항에서 정한 재조사금지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춰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세법」 제111조의 재조사금지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가산세 부과의 적정성 여부의 판단

원심은, 원고가 인천세관의 수입신고 심사 당시 소외 회사로부터 발행받은 대금청구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인천세관은 이 사건 미지급금액이 이 사건 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돼야 하는지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기회가 없었다는 등의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춰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Ⅳ. 검토 의견

1. 중복조사금지원칙의 개념 및 법리적 기초

「관세법」 제11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중복조사금지원칙은 동일한 납세자에 대해 동일한 과세기간 및 동일한 수입물품·과세항목에 대해 다시 관세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다. 세관공무원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반복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게 되면 납세자의 영업활동이 위축되고 심각한 법적 불안정 상태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해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호하고 과세관청의 무분별한 조사권 행사를 통제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이러한 중복조사금지원칙은 단순한 행정상의 편의나 법률적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도출되는 과잉금지원칙(비례원칙) 및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원칙에 법리적 뿌리를 두고 있다. 과세관청이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실현이라는 국가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더라도 납세자의 기본권(재산권 및 영업의 자유)을 침해할 때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 이미 한 번 과세자료를 제출받아 조사를 마쳤음에도

국가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조사권을 반복 행사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과도하고 불필요한 부담을 가하는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따라서 중복조사 금지는 「헌법」상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과세권 행사의 헌법적 한계라 볼 수 있다.

여기서 세관공무원의 일련의 행위가 중복조사가 금지되는 관세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과세관청이 부여한 명칭이나 절차적 형식에 의해서만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조사의 목적과 경위, 상대방, 질문검사권 행사 여부, 조사의 규모 및 기간, 수집한 자료의 성격 등 실질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법리에 따를 때, 세관공무원이 납세자나 관계인을 직접 접촉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질문검사권을 행사하고 과세를 위한 직접·간접 자료를 검사·수집하는 일련의 행위를 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관세조사에 해당한다고 본다.

그러나 세관공무원의 모든 접촉이나 자료 요청이 곧바로 재조사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당초 개시된 관세조사의 범위 내에서 이미 제출된 자료의 오류를 바로잡거나 신고내용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 단순히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하고 사실관계를 재확인하는 행위는 독자적인 새로운 조사가 아니라 기존 조사의 연장선상에 있는 적법한 검증 절차에 불과하다. 따라서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행위가 납세자에게 새로운 법적 부담을 가하는 질문검사권의 재발동인지 아니면 기존 조사를 완결짓기 위한 단순한 서류 확인 행위인지 그 실질을 명확히 구별해 중복조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구분 기준은 행정심판의 재결(결정)이나 행정소송의 확정판결 이후 세관장이 취하는 후속 처분이 '판결에 따른 필요한 처분'인지 아니면 별개의 '새로운 처분'인지 구별하는 행정법상 법리와 동일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30조 및 「행정심판법」 제49조에 따르면, 과세처분이 법원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취소된 경우 과세관청은 판결이나 재결의 취지에 따라 필요한 처분(재처분)을 할 의무를 진다. '필요한 처분'이란 당초 처분의 절차적·실체적 하자를 판결 취지에 맞게 시정·보완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다시 행하는 처분을 의미한다. 이는 기존 처분의 연장선상에서 적법성을 회복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적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반면, '새로운 처분'이란 판결이나 재결의 기속력 범위를 벗어나 이미 확정판결로 취소된 당초 처분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유를 반복해 다시 과세하거나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재조사를 바탕으로 별개의 과세를 강행하는 처분을 의미한다. 이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정면으로 위배되거나 중복조사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그 자체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위법한 처분이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관세조사 종료일 이후에 이뤄진 세관장의 후속 행위 역시 기존 조사 절차를 완성하기 위한 검증·보완 행위(필요한 처분과 유사한 맥락)인지 아니면 기존 조사와 단절된 별개의 독자적 재조사(새로운 처분과 유사한 맥락)인지에 따라 그 적법성이 명확히 갈린다.

두 개념의 실질적 차이를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먼저 기존 조사의 연장선에 있는 검증·보완 행위는 이미 개시된 관세조사라는 틀 안에서 납세자가 늦게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거나 당초 요구했던 자료의 사실관계를 단순 재확인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비유하자면 이미 시작된 하나의 시험에서 마감 시간이 살짝 지나 제출된 답안지를 채점하고 오탈자를 확인하는 과정과 같아 새로운 질문이나 별개의 과세 항목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 조사를 완결짓기 위해 필수적인 수순이므로 행정소송상 적법한 필요한 처분과 같은 맥락에서 정당성이 인정된다.

반면 별개의 독자적인 재조사는 조사기간이 끝난 후 기존 조사 범위나 항목을 넘어 새로운 과세요건을 파헤치거나 납세자의 사업장을 재방문해 강제적인 질문검사권을 다시 발동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시험이 모두 끝난 후 이미 정답 처리된 문제집을 다시 빼앗아 완전히 새로운 기준으로 재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과 같아 납세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법적 불안을 안겨주는 조사권 남용이자 중복조사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상 위법한 새로운 처분과 마찬가지로 부적법해 취소 대상이 된다. 결국 세관공무원의 조사행위가 기존 조사의 연장선상에서 적법성을 갖춘 행위인지 아니면 중복조사금지원칙을 위배해 위법성을 띤 새로운 조사권 행사인지 여부는 행정법상 '필요한 처분(적법)'과 '새로운 처분(위법)'을 구별하는 법리에 비춰볼 때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2.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적용될 수 있는 이론

중복조사금지원칙과 관련해 제1차 부분 관세조사 후 잔존 부분에 대해 제2차 관세조사를 실시하는 것에 관한 학설은 크게 가능설(제1설), 불가능설(제2설), 예외적 가능설(제3설)의 세 가지 시각으로 나뉜다.

우선 제1설인 가능설은 제1차 관세조사가 특정 과세요건이나 일부 기간에 국한된 부분조사 방식으로 실시된 경우, 당시 실질적인 심사나 조사가 미처 이뤄지지 않은 나머지 잔존 부분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정당한 신뢰나 절차적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세관청이 사후에 추가적인 제2차 관세조사를 얼마든지 개시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다. 이 견해는 과세관청이 최초 조사 당시 과세 인력이나 조율된 스케줄상 한계로 인해 일부 항목만을 엄선해 부분조사를 진행한 것이라면 조사받지 않은 나머지 과세영역에 대해서는 여전히 과세관청의 정당한 과세권과 심사권이 소멸하지 않고 유지된다는 논리에 기반한다. 즉, 제1차 조사에서 다루지 않은 미조사 영역은 납세자 입장에서도 실질적인 조사 부담을 겪지 않은 부분이므로 이를 대상으로 제2차 관세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중복조사가 아닌 미진한 영역에 대한 최초의 조사에 불과해 금지되는 재조사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파악한다. 결과적으로 제1설인 가능설은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조사 확장을 일정 부분 용인하더라도 탈세를 방지하고 누락된 관세를 정확히 추징하는 실체적 진실 규명과 공평과세 실현을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보다

우선시하는 입장이다.

반면 제2설인 불가능설은 「관세법」 제110조의2가 규정하는 통합조사원칙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 과세관청이 일단 관세조사를 착수한 이상 해당 과세기간 및 납세 법인의 수입 거래 전반에 대한 조사를 일괄해 완결짓는 것이 원칙이므로 당초 조사대상에서 누락됐거나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잔존 부분이라 할지라도 사후에 다시 별도의 제2차 관세조사를 개시하는 것은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엄격히 위배돼 불가능하다고 보는 견해다. 이 견해는 과세관청이 임의로 조사의 범위를 쪼개어 부분조사를 실시한 뒤 잔존 부분에 대해 수시로 제2차 조사를 재개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납세자는 언제 다시 조사를 받게 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지위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영업의 자유와 절차적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받는다고 판단한다. 즉, 최초 관세조사 당시에 과세관청이 스스로 잔존 부분에 대한 조사를 누락했거나 과실로 다루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불이익을 납세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되며 행정 편의적인 반복조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중복조사금지원칙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파악한다. 결과적으로 불가능설은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조사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확보와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 준수를 공평과세나 행정적 효율성보다 최우선시하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제3설인 예외적 가능설은 원칙적으로는 동일한 조사대상에 대한 재조사를 금지해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와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되, 실체적 진실 규명과 적정한 과세 실현을 위해 법령이 정한 특별하고 명백한 사유가 존재하는 예외적인 상황에 한해 제한적으로 제2차 관세조사를 허용하는 관점이다. 실제로 관세조사 실무의 지침이 되는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 제8호는 「관세법」 제111조 제2항에 따른 중복조사의 금지를 규정하면서 이미 통지되거나 교부된 조사 대상에 대한 재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가. 관세탈루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나.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 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불복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내려진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 '라. 밀수출입, 부정·불공정무역 등 경제질서 교란을 통한 탈세혐의자에 대한 일제조사' 등 엄격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다시 조사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제3설인 예외적 가능설의 입장을 채택하고 있다.

3. 중복조사금지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세관공무원의 일련의 행위가 새로운 관세조사(재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기존 조사의 연장 또는 단순한 협조 요청에 불과하다고 보는 대표적 사례와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납세자가 조사 기간 중 제출하지 못했거나 뒤늦게 제출한 자료에 대해 수입신고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할 목적으로 추가 설명을 요구하거나 서류를 제출받는 경우다. 관세조사는

한정된 기간 내에 복잡한 수입 거래의 과세가격 및 품목분류 적정성을 검증하는 절차다. 조사기간 동안 납세자가 핵심 자료를 적시에 제출하지 못하고 조사종료일 직전이나 도과 후에야 비로소 제출하는 경우, 세관공무원이 해당 제출 자료의 진위와 정확성을 검증하는 것은 당연한 과세 권한의 행사다. 이는 당초 개시된 관세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사후확인 절차에 불과하므로, 새로운 질문검사권을 행사해 별개의 과세요건을 들춰내는 새로운 관세조사로 볼 수 없다. 납세자 스스로 제출을 지연해 발생한 검증 기간을 위법한 재조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기 어렵다.

둘째, 세관공무원이 납세자의 사업장에 직접 방문해 현장조사를 재개하거나 강제적인 질문검사권을 재발동함이 없이 납세자의 임의적 협조에 기반해 제출된 서류만을 검토하는 경우다. 세관공무원이 납세자의 사업장을 재방문해 장부와 서류를 수색·압수하거나 법적 강제력을 동반한 질문검사권을 다시 발동하는 행위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므로 엄격한 재조사에 해당한다. 그러나 세관공무원이 현장 방문 없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식으로 단순 자료 보완을 요청하고, 납세자 역시 어떠한 강요나 회유 없이 임의로 이에 협조해 서류를 제출·설명하는 수준에 그쳤다면 이는 납세자의 침해 정도가 극히 적다. 따라서 세관공무원이 납세자의 묵시적·명시적 동의와 임의적 협조 아래 수행한 단순 서면 검토 행위는 중복조사금지원칙이 금지하는 고권적 재조사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셋째, 이미 진행 중인 조사 대상 거래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누락된 과세요건을 보완하기 위해 단순 사실을 재확인하는 행위다. 재조사는 이미 조사가 완료돼 확정된 과세기간 및 과세항목에 대해 새로운 조사권을 발동해 납세자를 다시 불확실한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당초 조사 대상이었던 특정 수입 거래의 동일 범위 내에서 과세가격 산정 산식의 오류를 수정하거나, 미비된 청구서(Invoice) 내역을 대조·확인하는 등 단순 사실관계를 재확인하는 행위는 기존 조사의 밀접한 연장선상에 위치한다. 이는 완전히 별개의 거래나 새로운 항목을 추가로 파헤치는 조사가 아니므로, 과세요건을 명확히 정리해 적법한 처분을 내리기 위한 기존 조사의 마무리 단계로 봐야 한다.

4.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적용되는 '해당 사안'에 대한 판단

「관세법」 제111조 제2항은 동일한 납세자에 대해 '해당 사안'에 대해 다시 조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이라는 명확한 법정 기준을 제시하는 것과 달리, 「관세법」은 불확정개념인 '해당 사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이에 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국세와 관세의 서로 다른 성질 및 국세청과 관세청의 소관업무 차이 등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실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중복조사 해당 여부 역시 국세의 부과·징수 측면에서만 판단하면 되고, 이러한 점이 반영돼 과세요건을 의미하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세관공무원은 관세라는 조세 부과만을 위해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관세고권에 근거한 국경감시를 통해 통관의 적법성을 확보한다거나 마약 등 위해물품 반입차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조사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관세조사는 다양한 형태를 띨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중복조사 해당 여부 판단기준도 「국세기본법」과 같이 과세요건만을 중심으로 규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중복해 실시되는 조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차이점을 반영해 해석해야 한다.[2)]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안'이라는 추상적인 용어로 인해 세관공무원이 수행한 후속 행위가 금지되는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의 해석 범위를 둘러싸고 학계와 실무에서 견해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3)] 관세행정 실무상 관세조사(심사)는 수행 부서와 조사 목적 및 대상에 따라 이원화·다양화돼 진행되므로 '해당 사안'의 범위 역시 과세관청이 적용한 심사 유형에 맞춰 다음과 같이 유연하게 해석·확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1) 건별심사: 개별 '수입신고서(B/L 건)' 단위

건별심사는 세관 조직 내 본부세관 납세심사과 또는 4급지 세관 내 심사부서에서 주로 수행하는 심사 방식이다. 이 심사는 수입자가 제출한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 단위의 개별 수입신고서 및 이에 첨부된 서류를 중심으로 통관 단계 전후의 적정성을 심사하므로, 건별심사의 맥락에서 중복조사가 금지되는 '해당 사안'은 세관에 제출된 '해당 개별 수입신고서(1건의 수입신고)' 그 자체가 된다. 실무적으로 건별심사는 주로 품목분류(HS Code) 검증에

---

2) 백혜영, '국세기본법과 관세법상 중복조사 금지에 관한 비교연구', 인권과 정의, 제501권, 2021.

3) 일부 논문[박설아, '관세법상 중복조사금지원칙의 적용과 한계', 租稅와 法, 제14권 제2호(2021)]에서는 「관세법」상 '해당 사안'의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5가지 견해로 나눠 논의를 전개한다. 1설(수입물품설): 과세물건인 개별 수입물품을 해당 사안으로 보는 견해이다. 2설(기존 조사 범위설): 기존 기업심사 통지서에 기재된 조사 대상 및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견해이다. 3설(통관적법성 분야 및 조사기간설): 관세청 훈령 등을 근거로 같은 통관적법성 분야 및 같은 조사대상 기간을 해당 사안으로 보는 견해이다. 4설(대법원 판례 시각 분석): 동일한 수입물품에 대해 과세가격을 조사한 후 다시 과세가격을 조사하는 것만 금지된다고 봐 신고납부세액과 통관적법성 조사를 분리하는 견해이다(대법원 2020.2.13. 선고 2015두745 판결 등). 5설(수입신고 기준설): 관세조사는 수입신고별 조사가 원칙이므로 수입신고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견해이다. 특히 박설아는 5설을 타당한 견해로 취하면서 1건의 수입신고서에 복수의 품목이 기재되는 경우를 대비해 재조사가 금지되는 해당 사안은 '같이 수입신고된 동일한 품목의 수입물품'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5설 중심의 결론은 모든 관세조사를 개별 수입신고나 물품 단위의 심사로 환원해 판단하는 오류가 있다고 판단한다. 관세행정은 건별 수입신고를 검증하는 건별심사 외에도 법인 전체의 위험을 종합 검증하는 법인심사(기업심사)와 특정 위험 요소만 타깃으로 삼는 기획심사로 정교하게 이원화·다양화돼 있다. 일률적으로 '동일한 품목의 수입물품'만을 해당 사안으로 규정한다면 기업 전체의 8대 통관적법성을 일괄 조사하는 법인심사의 통합조사적 성격을 설명할 수 없게 된다. 판단컨대, 심사 유형별 목적과 범위에 맞추어 '해당 사안'을 입체적으로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중복조사금지원칙의 형해화를 막고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권한 남용을 차단함과 동시에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타당한 법 해석이라고 본다.

치중해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는 품목분류의 경우 세관장이 납세자에게 별도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수출자의 공개된 웹사이트나 제반 정보원을 통해 필요한 기술 정보를 직접 확보해 심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과세가격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법인심사처럼 자료제출요구권과 질문조사권을 발동해 기업 내부의 밀접한 회계장부 및 거래자료를 확보해야만 하는데, 건별심사를 담당하는 본부세관 납세심사과나 4급지 세관 심사부서에는 법령 및 조직 체계상 이와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결국 건별심사는 권한 행사의 제약상 개별 수입신고서 단위를 기준으로 품목분류 등의 한정된 사안을 심사하는 구조를 가지므로 그에 맞춰 '해당 사안' 범위 역시 개별 수입신고서 자체로 국한돼 해석돼야 한다.

2) 기획심사: 지정된 '기획심사 대상 항목'

기획심사는 본부세관 조직 내 심사총괄과 및 심사관실 등에서 특정 수입 유형, 특정 산업군 또는 특정 위험 요소(예: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격, 특정 감면 항목 등)를 선별해 집중적으로 검증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기획심사의 맥락에서 중복조사가 금지되는 '해당 사안'은 특정 납세자의 수입신고서 전체나 일정 기간의 전체 수입 거래가 아니라 관세당국이 사전에 통지하고 심사대상으로 명시한 '해당 기획심사 항목(특정 과세요건 및 이슈)'에 한정된다. 즉, 관세당국이 특정 수입물품의 '외환 거래 적정성'이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등 한정된 이슈만을 타깃으로 삼아 핀포인트 방식의 기획심사를 수행한 경우, '해당 사안'은 오직 그 기획조사 대상이 된 특정 항목으로 국한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후 세관이 동일한 과세기간이나 동일한 수입물품에 대해 완전히 다른 과세항목(예: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적정성 또는 관세율 적용 등)을 대상으로 별개의 검증을 진행하더라도 이는 종전 기획심사에서 다루지 않은 별개의 사안을 조사하는 것이므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세관청의 효율적이고 정당한 과세행정권 행사로 인정된다.

3) 법인심사: '8대 통관적법성 분야' 전체

법인심사[4]는 납세자인 기업(법인) 전체의 일정 기간 수입 거래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방식으로 서울본부세관 심사총괄1·2과, 심사1·2국 소속 심사관실, 부산·인천본부세관 심사총괄과와 심사관실, 대구·광주본부세관, 평택직할세관 심사과국 세관 심사2국, 부산세관 심사국, 인천세관 심사국 등 법인심사 전담조직에서 수행한다. 법인심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사업장에 직접 방문해 20일간에 걸쳐 서류 파악 및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요구권과 질문

4) 정확한 용어는 '관세조사'이나, 실무적으로 주로 '법인심사'라고 통칭하고 있다. '관세조사'는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 제1호에서 "관세조사는 「관세법」 제2조 제20호에 따라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방문 또는 서면으로 납세자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법 제110조의2에 따라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하며 정기 관세조사와 비정기 관세조사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사권을 강력하게 행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관세법」 제110조의2가 규정하는 통합조사원칙에 따라 법인심사에서의 '해당 사안'은 개별 수입신고서나 특정 항목에 국한되지 않고 8대 통관적법성 분야 전체를 의미하며[5] 이 8대 통관적법성 분야에는 과세가격, 세율, 감면, 환급, 추천요건, 외환, 지식재산권, 원산지[「관세법」상 원산지를 의미하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관세특례법')상 원산지는 제외함]가 포함된다.[6]

5. 법원의 중복조사금지원칙 엄격 적용 추세 및 관세행정 대응

대법원(2023.12.28. 선고 2020두53298)은 수사기관의 고발의뢰에 따라 이뤄진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고,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한 바 있다. 해당 사안은 국세청이 검찰의 고발의뢰에 따라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변호사인 원고가 집단소송을 수행하고 수령한 거액의 성공보수를 축소 신고함으로써 조세를 탈루했다고 봐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증액 경정했는데, 원고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2012년, 2014년 및 2017년경 3차례에 걸쳐 이미 세무조사가 이뤄졌으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가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이다.

원심은 이 사건 세무조사가 3차례에 걸쳐 이뤄진 원고에 대한 종전 세무조사와의 관계에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이뤄진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또는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를 하는 경우'나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 피고가 주장하는 예외적인 재조사 허용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에 기초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으며 대법원도 원심을 그대로 인용했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은 「국세기본법」의 중복조사금지 조항과 법리적 구조를 공유하는 관세조사 실무에 있어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을

---

5)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 제2호에서 "통관적법성이란 신고납부세액과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 관련 의무이행의 적법 여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9조(관세조사분야)에서는 1. 과세가격에 관한 사항(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특수관계 사전심사)를 신청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결과가 통보된 물품의 과세가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 품목분류 및 세율에 관한 사항 3. 수출입에 관한 허가·승인·추천 등의 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한 사항 4. 수출입 신고물품에 대한 품명·규격·수량·중량 등 수출입신고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관세환급(소요량 계산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6. 관세감면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7. 개별소비세 등 내국세에 대한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사항 8.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 및 증명서류에 관한 사항(「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원산지에 관한 조사는 제외한다) 9.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사항 10. 보세구역 관련 업무수행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통관, 외환 거래 및 수출입 물품과 관련한 법령 위반 사항 등 총 11개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실무에서 통상 '8대 통관 적법성'이라고 부른다.

제공한다.

첫째, 검찰·경찰 등 외부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통보나 고발의뢰가 존재하더라도 곧바로 재조사의 합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관세행정 실무에서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밀수, 관세포탈, 외환거래 위반 등의 혐의 자료나 고발의뢰가 세관으로 이송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비춰 볼 때, 외부기관의 수사 의뢰가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관세법」 제111조 제2항이 금지하는 중복조사의 예외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이 제공한 자료가 과세 형량 및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면, 세관이 이를 이유로 동일 사안이나 동일 법인에 대해 다시 관세조사를 착수하는 행위는 위법한 재조사로 평가받을 위험이 크다.

둘째, 중복조사 예외 사유인 조세탈루(관세포탈)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대한 엄격한 해석 기조를 확인시켜 준다. 관세당국이 재조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탈루 가능성이 의심된다는 정황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며 기존 조사 당시 확보할 수 없었던 새로운 차원의 명백한 증거가 확보돼야 한다. 따라서 세관공무원은 수사기관의 이송 자료를 바탕으로 재조사를 착수할 때 해당 자료의 객관성과 입증 가능성을 사전 검증하는 절차를 한층 철저히 거쳐야 한다.

셋째, 적법절차 준수와 납세자 권익보호의 우선적 가치를 재확인했다. 행정의 효율성이나 탈루 세액의 추징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존재하더라도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중복조사는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세관장은 외부 수사기관과의 공조 절차에서 법률이 정한 재조사 요건을 엄격히 해석·적용함으로써 자의적인 관세조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6. 대상판결에 대한 분석

대상판결이 조사종료일 이후의 조사행위를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중복조사금지원칙 위반 주장을 배척한 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논리적 관점에서 타당하다고 본다.[7]

1) 납세자 측의 귀책사유 존재

원고는 당초 사전 통지된 조사기간 내에 과세가격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외 회사의 대금청구서(Invoice) 및 관련 핵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원고는 조사종료일 직전이나 심지어 조사 기간이 도과한 후에야 비로소 해당 과세자료를 제출했다. 과세관청이 수입거래

7) 쟁점사항 중 '과세가격 적정성 여부 판단'과 '가산세 부과의 적정성 여부 판단'에 대해서는 평석을 생략하기로 한다.

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제출된 자료의 진위와 회계적 성격을 검토할 최소한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납세자가 자료 제출을 지연하거나 뒤늦게 자료를 냄으로써 발생한 검증 기간의 연장은 납세자 스스로가 원인을 제공한 결과다. 이러한 납세자 측의 귀책사유를 도외시한 채 단지 사전 고지된 조사종료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세관의 후속 검증행위를 위법한 재조사로 판단한다면 납세자가 의도적으로 자료 제출을 지연시켜 과세관청의 정상적인 조사권을 무력화하는 부당한 결과를 용인하게 된다.

2) 세관장의 적법절차 준수 및 불이익 강제 부재

세관공무원은 당초 고지된 조사종료일이 지난 후 원고의 사업장을 재방문해 새로운 과세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법적 강제력을 동반한 질문검사권을 다시 발동하지도 않았다.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뒤늦게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검증하고 이에 대한 추가 설명이나 미비한 보완 자료를 요청했을 뿐이며 그 과정에서 회유, 강요, 압박 등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수단을 전혀 동원하지 않았다. 원고 역시 세관의 추가 자료 요청에 능동적으로 응해 임의로 자료를 제출하는 등 묵시적으로 동의하고 협조했다. 따라서 세관공무원의 행위는 권력적·강제적 조사권 행사가 아니었으므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거나 관세조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제출받은 자료의 동일성 및 연장선

조사종료일 이후 세관공무원이 확인하고 검토한 자료는 당초 개시된 관세조사 범위와 무관한 완전히 별개의 거래나 새로운 항목에 관한 자료가 아니다. 이는 1차 조사 기간 당시 세관장이 원고에게 제출을 요구했으나 원고가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던 바로 그 대금청구서 및 관련 서류에 한정된다. 즉, 세관공무원이 조사 대상 과세기간이나 수입물품 범위를 넓혀 새로운 조사를 착수한 것이 아니라 최초 조사 범위 내에 있던 동일한 거래의 누락된 과세자료를 비로소 제출받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조사종료일 이후에 이뤄진 세관공무원의 확인 행위는 독립된 별개의 관세조사(재조사)가 아니라, 당초 시작된 관세조사 범위 내에서 미완의 검증을 마무리 짓기 위한 기존 조사의 연속이자 적법한 연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7. 조사기간 종료 직전·도과 후 자료 제출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안)

현행 「관세법 시행령」 제139조의2 제2항 및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7조 제1항은 조사 기간의 확장에 대해 조사기피행위가 명백한 경우, 거래상대방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탈세 제보, 조사유형 변경, 수출입

의무이행 법령 위반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실관계 확인이나 증거확보가 필요한 경우[8] 등 제한적인 사유만을 열거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체계하에서 대상판결 사건은 조사기간 연장을 할 수 있는 법적 사유를 찾아 보기 어렵다. 이로 인해 납세자가 조사 종료 직전이나 조사기간 도과 후에 과세가격 판단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세관공무원이 해당 자료를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가 부재해 절차적 정당성 논란과 중복조사 시비가 발생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불합리를 개선하고 납세자의 성실한 협조 유도 및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를 도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제안한다.

1)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7조 개정(안)

현행 「관세법 시행령」 제139조의2 제2항 및 훈령 제37조 제1항 단서의 대상기간 확장(또는 연장) 사유에 '납세자의 자료 제출 지연'을 명시적 사유로 신설하는 방안을 아래와 같이 규정함으로써 세관공무원의 정당한 검증 권한을 규정한다. 기대효과로서 납세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자료 제출 지연 시, 세관장이 직권으로 조사의 연장 및 보완 검증 절차를 공식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사후 검증 행위가 새로운 재조사가 아닌 기존 조사의 적법한 연장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중복조사 위반 논란을 근본적으로 차단한다.

● 신설(안) ●

> "납세자가 관세조사 기간 종료 직전에 중요 과세자료를 제출하거나 조사기간 도과 후 자료를 제출하여 해당 자료의 진위 및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최소한의 조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2) 납세자 귀책 사유에 따른 '조사기간 정지' 제도 도입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일시정지 제도를 벤치마킹해, 납세자가 필수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관세조사 기간의 진행을 법적으로 정지시키는 제도를 명문화하는 방안이다. 즉,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조사기간 정지 관련 조항을 신설하거나 보완해 세관장의 정당한 자료 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응하지 않거나 제출을 지연하는 경우 그 지연 기간만큼 관세조사 기간의 경과가 정지되도록 규정한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서 납세자가 조사종료일 다수를 의도적으로 지연시켜 세관의 관세조사를 무력화하려는 전략적 자료 제출 방해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과세관청에 실질적인 검증 시간을 보장한다.

8) 「관세법 시행령」 제139조의2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한 '사실관계 확인'은 단지 사실관계 확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전제가 돼야만 비로소 조사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V. 결론

대상판결은 관세조사 절차에서 관세조사권 남용금지 및 중복조사금지원칙이 적용되는 구체적 기준과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한 최초의 판례로서 그 법리적 의의가 매우 크다. 세관공무원이 사전 통지된 조사종료일 이후에 추가적인 자료 요청이나 설명 요구 등의 후속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이를 무조건 위법한 재조사나 조사권 남용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그 추가조사가 납세자의 자료 제출 지연이나 조사 기간 도과 후 자료 제출이라는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고, 세관공무원이 납세자의 사업장을 재방문하거나 강제적인 질문검사권을 재발동함이 없이 납세자의 임의적 협조 아래 종전 조사의 대상 자료를 검증·확인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독립된 별개의 재조사가 아니라 기존 관세조사의 정당한 연장선상에 있는 검증 절차로 봐야 한다.

본 판결은 세관공무원의 무분별하고 자의적인 재조사로부터 납세자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중복조사금지원칙의 헌법적·법률적 취지를 훼손하지 않았다. 동시에 납세자가 과세자료 제출을 의도적으로 지연하거나 방해함으로써 과세관청의 정당한 과세가격 검증 권한을 무력화하려는 불합리한 시도를 차단했다. 결국 대법원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과 과세관청의 정당한 과세권 행사라는 두 법익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이룬 합리적 법리를 확립한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관세행정 실무 및 관련 분쟁에 있어서도 조사종료일 이후의 검증 행위가 적법한 '기존 조사의 연장(필요한 처분의 맥락)'인지 아니면 위법한 '새로운 재조사(새로운 처분의 맥락)'인지를 판단할 때, 조사 목적의 동일성, 현장 방문 및 강제력 행사 여부 그리고 납세자의 자료 제출 지연 여부 등이 핵심적인 판단 규범으로 작용할 것이다.

비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직물의 HS Code

이 영 주 | 중앙관세분석소

직물류의 품목분류는 직물의 조직, 염색 여부, 섬유의 종류 및 혼용률 등에 따라 세번이 세분화돼 있어 외관만으로는 정확한 품목분류를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제54류 합성필라멘트 직물은 폴리에스터 함량이나 실 가공 여부 등에 따라 동일한 형태의 직물이라도 서로 다른 품목분류가 적용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세번 정정 이유] 본 물품은 보라색 직물로 '그 밖의 염색 직물'에 해당하는 제5407.92-2000호로 신고했다.

제5407호는 "합성필라멘트사(synthetic filament yarn)나 제5404호의 모노필라멘트(mono filament)나 스트립(strip)으로 제직한 직물(제11부의 총설(Ⅰ)(C)의 규정과 같이)을 분류하며 ; 드레스용 직물·옷 안감·커튼재료·실내장식용 직물·텐트용 직물·낙하산용 직물 등의 대단히 광범위한 여러 가지의 직물을 포함한다"고 설명한다.

여기서 '필라멘트사'는 **길이가 매우 긴 연속섬유를 여러 가닥 모아 만든 실**로, **길이가 짧은 섬유를 모아 꼬아 만든 실**을 의미하는 '스테이플사'와 구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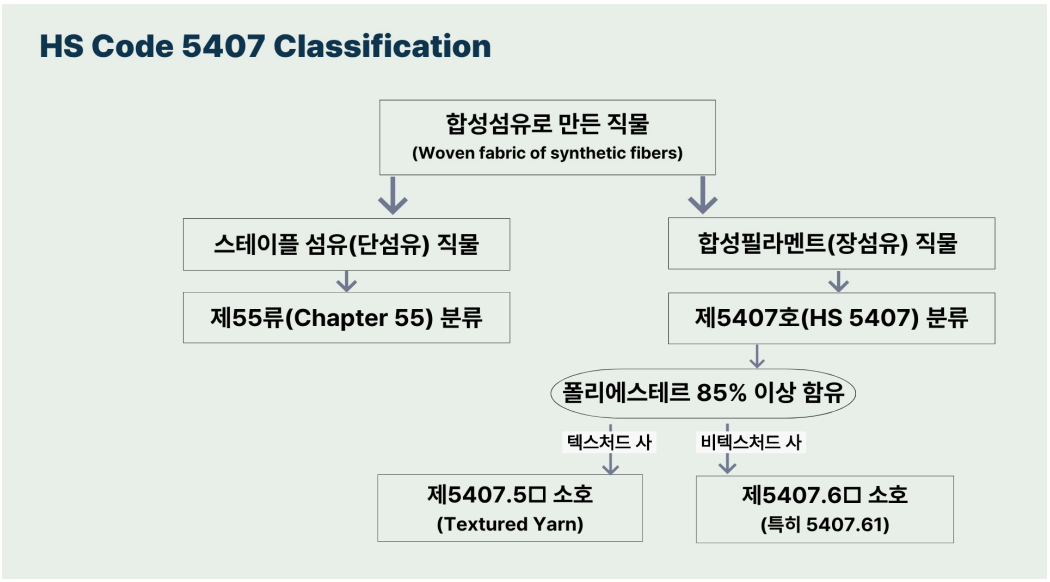

또한, 제5407.5호는 텍스처드 사와 비텍스처드 사를 구분해 분류하는데 아래 그림으로 비교해 보자.



실을 풀어보면 텍스처드 사의 경우 부풀어 오르고 구불구불한 모양이 육안으로 확인된다.

소호 제5407.61호는 '비(非)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을 세분류하고 있으며, 본 물품은 비텍스처드 폴리에스터의 함량이 100%인 보라색 염색 직물로서 제5407.61-2000호로 정정 분류했다.

신고품명	신고세번(세율)	회보품명	정정세번(세율)
CURTAIN FABRIC	제5407.92-2000호 (FCN1 0%)	Other woven fabrics containing 85% or more by weight of non-textured polyester filaments, dyed	제5407.61-2000호 (FCN1 8%)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신간 도서안내

2026 개정판
관세법령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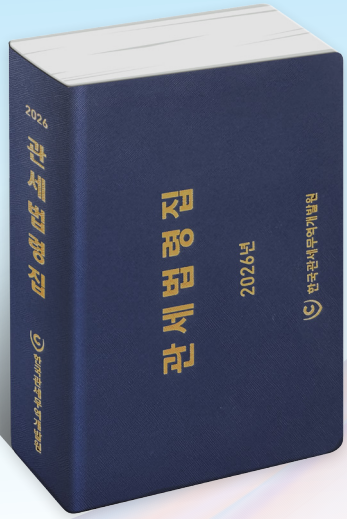

- **관세 행정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수록 법령 개편**
  「행정기본법」·「행정절차법」등 신규 수록
- **2026년 4월 1일까지 최신 개정 법령 반영**
  최신 법조문과 관련 고시·판례 통합 업데이트
- **법령 구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3단 구성**

2026 HS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

관세 · 무역 실무를 위한 가장 확실한 기준



- **2026년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 및 FTA 연차세율 반영**
  - 22개 FTA(CEPA, SECA 포함), WTO 협정 등 반영
  - 한·UAE CEPA, 한·에콰도르 SECA 신규 수록
  - 한·EU, 한·영국 FTA 상·하반기 세율 반영
-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및 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사항 수록**
- **통합공고 및 기타세율 규정, 내국세법 등 주요 개정사항 반영**

도서 구매 문의 안내

구매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smartstore.naver.com/kctdi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더욱 다양한 도서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TEL (02)3416-5112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지식사업실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도서 판매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